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71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313,141,240원, 지방교육세 57,983,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가. 원고는 2012. 6. 22. 광주시 B 비동 202호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을 [redacted]시 C건물(이하 'C건물'라고 한다) 10층 5호, C건물 102호(이하 'D 사무소'라고 한다)로 순차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redacted]시 [redacted]구 E 대 7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대도시 외 법인의 유상 취득에 따른 일반세율(4%)로 취득세 232,231,720원, 지방교육세 23,223,170원, 농어촌특별세 11,611,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6,598.73㎡ 규모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5. 22. 보존등기를 마치고, 원시취득에 따른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취득세 169,107,070원, 농어촌특별세 12,079,070원, 지방교육세 9,663,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G건물 306-1호(이하 'G 사무소'라고 한다)를 주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금액을 추가하여,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313,141,240원, 지방교육세 57,983,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피고는 과밀억제권역 내의 G 사무소를 원고의 주사무소라고 전제함으로써 원고가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G 사무소는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분양사무실일 뿐이고, 원고의 주사무소는 [redacted]시에 소재한 D 사무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2. 7. 3. C건물 10층 5호에 관하여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4.부터 2014. 7.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4. 5. 1. C건물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I은 원고가 2012. 7. 1.부터 2013. 6. 10.까지 C건물 1005호에, 2013. 6. 10.부터 2014. 4. 30.까지 C건물 101호에, 2014. 5. 1.부터 현재까지 C건물 102호에 입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그런데 원고의 법인장부에는 위 C건물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한편 원고는 H과 사이에 G 사무소를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의 법인장부에는 2012. 8.경부터 2014. 9. 중순까지 G 사무소의 임료, 관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비 및 수도요금 등이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장부에 계상된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 비용 대부분이 G 사무소 인근의 거래처에서 발생되었다.

6)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원고의 대표이사 명함에는 G 사무소가 원고의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입전화 등록소재지도 G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았으며, 원고의 직원근무복도 G 사무소로 배송되었다.

7)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C 건물 1005호로 발송하였으나 2013. 9. 17.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후 원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G 사무소로 발송하였다.

8) 2015. 1. 6. 피고 담당직원의 현장조사 당시 D 사무소에는 건물 내부 입주안내 현황판 등에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 중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G 사무소의 건물 내부 입주안내 현황판 등에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I과 사이에 C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그 임대차기간 동안 관리비 및 공과금이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본점이 D 사무소에 개설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한 2012. 8.경부터는 D 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고 별도의 운영비용도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원고는 2012. 8.경 G 사무소를 임차하였는데, 위 사무소에는 원고의 직원들이 상주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였고 전화기 등 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었던 점, ④ 또한 그 무렵 원고의 운영경비 대부분이 G 사무소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원고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위 사무소로 송달받아 처리하는 등 위 사무소에서 부동산 분양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늦어도 2012년 8월경부터는 G 사무소에서 주된 사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둠으로써 대도시에 전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강미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